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5
----------	----

발의연월일 : 2007. 1. 12.

발 의 자 : 광영교 의원 외 6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2005. 8. 4 법률 제7664호)됨에 따라 조례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4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3조중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로 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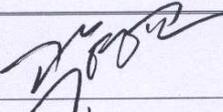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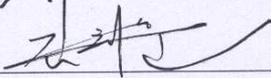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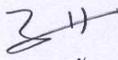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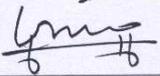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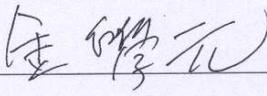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별위원회)</p> <p>①(생 략)</p> <p>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④(생 략)</p>	<p>제7조(특별위원회)</p> <p>①(현행과 같음)</p> <p>②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④(현행과 같음)</p>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찬 성 의 원 명 단

찬 성 의 원	서 명	비 고
곽 영 교		
김 태 훈		
박 채 선		
장 문 철		
송 재 응		
전 상 이		
김 혁 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2005.8.4 법률 7664호]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